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12.29.(일) 12:00
(지 면) 2024.12.30.(월) 조간

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

- 각종 보증금 인하, 대가 지급기간 단축, 수의계약 절차 완화 등

-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,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,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.
-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, 지방교육청,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·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.
-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,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.
-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,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, 내수 침체 등 경제 하방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.
-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.
-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% 이상에서 2.5% 이상으로,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% 이상에서 5% 이상으로 인하되며,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% 이상에서 20% 이상으로 낮아진다.

② 검사·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.

- 검사·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,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.

③ 계약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.

-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,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□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등 내년에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과 같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서상우 (044-205-3771)
		담당자	사무관	권오영 (044-205-3781)



참고

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

구 분	현행 규정	특례 적용 시
입찰보증금	입찰금액의 <u>100분의 5</u> 이상	입찰금액의 <u>1000분의 25</u> 이상
계약 보증금	계약금액의 <u>100분의 10</u> 이상	계약금액의 <u>100분의 5</u> 이상
공사이행보증금 ※ 계약보증금 대체	계약금액의 <u>100분의 40</u> 이상	계약금액의 <u>100분의 20</u> 이상
검사기간	완료통지일로부터 <u>14일</u> , 연장 <u>7일</u>	완료통지일로부터 <u>7일</u> , 연장 <u>3일</u>
대가지급	청구를 받은 날부터 <u>5일</u> 이내	청구를 받은 날부터 <u>3일</u> 이내
수의계약 절차	<u>재공고 유찰시</u> 수의계약 허용	<u>1회 유찰시</u> 수의계약 허용